외부감사인 사후 평가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제6조(감사보수, 감사시간 등의 문서화)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관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차기감사인의 선정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관리한다.

1. 제7조 제4항(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 선정된 자로부터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 등을 확정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인으로 선정된 자와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확정할 수 있다)에 따라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2.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 해당 요구내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와 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해당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위원회와 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